

제 호

이러닝센터 지정서

1. 지정번호:
2. 기관·단체명(법인명):
3. 대표자 성명:
4. 주 소:
5. 지정업무의 범위: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

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행정기관의 장

직인